

1. 개정이유

어선의 결함신고접수 및 출항정지명령에 대한 권한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만 제한되어 있어 제도 운영상 효율성이 저하됨에 따라 어업관리단장에게 어선의 결함신고 접수 및 출항정지명령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를 위해 각종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모호하고 복잡한 규정으로 인해 국민의 혼란 야기됨에 따라 가중처분을 적용하기 위한 회차 적용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국민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고자함

2. 주요내용

- 가. 어업관리단장이 어선의 결함신고 접수하고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출항정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선(시행령 제16조)
- 나. 가중처분 적용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 누적차수는 1년이 지난 처분도 가중처분 적용차수에 포함(시행령 별표1, 별표1의2, 별표2)
- 다. 과태료 및 과징금을 감경할 때 체납된 과태료 및 과징금이 있는 경우 감경할 수 없도록 개정(시행령 별표1)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지자체 및 어업관리단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어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에 제4호의2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어선결함신고 접수

6의2.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출항정지명령

제1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내용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1제1호나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지난 처분이더라도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 포함한다.

별표 1제1호에 라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 및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1의2제1호다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지난 처분이더라도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 포함한다.

별표 2제1호나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지난 처분이더라도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 포함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감정기준에 관한 경과규정)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부과처분은 별표 1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
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현행과 같음)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
징금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이 경우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지
난 처분이더라도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대
상에 포함한다.

다.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과징금의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징금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
징금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
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사업자의 사업 규모, 사업구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
기와 그 결과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
여 과징금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

<신 설>

2. 개별기준 (생략)

[별표 1의2]

대행업무 정지처분의 기준(제16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대행업무 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가중 사

<u>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 및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1) <u>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 2) <u>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u> 3) <u>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u> 4) <u>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u>
2. 개별기준 (현행과 같음)

[별표 1의2]

대행업무 정지처분의 기준(제16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u>이 경우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지난 처분이라도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 포함한다.</u> 라. (현행과 같음)
--

유 또는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행정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대행업무 정지처분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2) (생략) 2. 개별기준 (생략)	1)·2)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현행과 같음)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제2호아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금액의 상한은 각각 100만원으로 한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략)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현행과 같음)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u>이 경우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지난 처분이더라도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 포함한다.</u>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 3) (생 략)	마.(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생 략)	2. 개별기준 (현행과 같음)